

## □ 제안이유

학생수 감소로 전주기린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법정 구성 정수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가.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구성 위원 수 조정

- 1)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3.1.자 기준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학생수에 따른 법적 구성 정수를 현행 12명(200명이상 1천명미만)에서 8명(100명이상 200명 미만)으로 조정(감축) 함

나. 코로나19 확산 및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 등 반영

- 1)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외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(2020.2.25.)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에 이를 반영함
- 2) 교원위원 선출에서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간제교사에게 선거권을 부여(피선거권 없음) 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 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제9조(선출관리위원회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및 교직원 4명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,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(또는 호선)로 선출하며 선거 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</p>	<p>제7조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, 학부모 위원 4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제9조(선출관리위원회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,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(또는 호선)로 선출하며 선거 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</p>

개최 전일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② ~ ⑥ (생략)
- ⑦ (선거인 명부 작성시)
- 1 ~ 2. (생략)
- 3.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

제11조(교원위원 선출)

- ①~③ (생략)

<신 설>

개최 전일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 ⑧ (선거인 명부 작성시)
- 1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학생이 1인 이상일 때에도 부·모 중 1명에게만 투표권이 있음

제11조(교원위원 선출)

-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

④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1인 1기표 방식으로 투표한다.

단,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.

⑤ (생략)

제15조(소위원회)

① (생략)

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<신 설>

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③~④ (현행과 같음)

⑤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1인 1기표 방식으로 투표한다.

단, 기간제 교사는 피선거권이 없으나 선거권은 부여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소위원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소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적용)제7조 제1항 및 제9조제3항, 제10조 제1항, 제10

조 제2항, 제11조 제2항, 제11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 부터 적용한다.

